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1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나. 그러나 서울시립병원의 경우 근속연수 감소와 잦은 이직 등으로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체계적 인적자원 관리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서울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6호)

나.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제1항에서 3항)

다. 시장이 시립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립병원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라. 시장은 시립병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 성장기여 및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제1항에서 제3항)

마. 시장이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호,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업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서울시립병원은 잦은 이직 등으로 안정적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체계적 인적자원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서울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서울시립병원은 총 12개소로 특수법인인 서울의료원¹⁾ 직영병원인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과 이외 8개의 민간위탁병원(동부, 보라매, 북부, 서남 및 정신병원 3개소)로 이루어져 있음.
- 각각의 병원 운영형태에 따라 신분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 이를

1)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설립

크게 분류하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또한 공무원의 경우도 임기제공무원²⁾과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운영형태	병원명	개소	신분
직영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3개소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
특수법인	서울의료원	1개소	서울의료원 법인 직원
민간위탁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백암·축령정신병원	8개소	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직원) 이외 각 수탁기관의 직원

- 직영병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직군과 간호직군의 경우 경력 경쟁채용(공무원 공채)를 통해 채용된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공무원의 기준에 해당하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최대 5년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음.
-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국내·외)교육훈련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2019년 4월 25일 서울시의회주최로 열린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교육훈련기회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서울시 직영병원 3개소에 대한 국내외 1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2) 최대 5년의 계약기간을 가지는 공무원

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어떠한 1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기회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기회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직영 시립병원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서울의료원과 민간위탁 병원은 각 병원 또는 수탁법인의 내규에 따라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6³⁾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병원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때,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 이를 다시 공공의료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나. 시립병원의 평가 및 포상, 표창

- 집행부는 12개 시립병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6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훈련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근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개정안은 시립병원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의무화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병원 사이의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은 또한 연 1회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병원장의 표창만이 아니라 시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시립병원의 직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진 급여의 한계 또는 병원별 경영상의 이슈로 인한 급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헌신에 대하여 무형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으로 시립병원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공의료의 가치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현재의 공공의료는 급여 등의 보상보다는 도덕성과 헌신, 직업윤리에 기대는 측면이 높은 상황임.

- 연 1회 시립병원 평가에 대하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립병원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이 외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이 폐원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별표에서의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하는

안으로 사업환경변화에 따른 조례의 개정임.

- 그간 용인정신병원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소송은 현재 마무리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소송내역

○ **1차 소송 내역**

소송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273(1심)		비 고
접수일자	'16. 1. 8.	
원고 청구액	596,760,556원	
청구내용	- 환자 진료비 ('15.9.16.~10.13.) - 사용료(통행료, 경비·기관실 인건비, 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주차장 이용료) ('15.09.01.~'16.10.31.)	
판결금액	208,866,867원	
판결일	'17. 4. 4.	항소, 판결금 지급
지급액(이자포함)	215,761,390원	예비비 사용
소송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1594(2심)		비 고
판결내용	원고, 피고의 항소 기각	1심 확정 ('18.10.3)

○ **2차 소송 내역**

소송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4550(1심)		비 고
접수일자	'18. 4. 10.	
원고 청구액	259,727,244원	
청구내용	- 경비·기관실 인력 인건비 ('16.11.01.~'17.12.31.) - 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16.11.01.~'17.12.31.)	
판결금액	258,804,537원	
판결일(확정일)	'18. 10. 31.(18. 11. 21.)	
최종지급액(이자포함)	287,946,630원	예비비 사용

3 종합의견

- 시립병원의 의료진들 중 직영병원의 경우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시립병원의 종사자들에게 공공의료수행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포상과 표창에 대한 부분들 역시 현재 공공의료에 가지고 있는 보상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91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용연, 김제리, 정진술,
양민규, 권순선, 이영실,
김화숙, 김경영, 이은주,
송아량, 이병도, 김소양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립병원의 경우 근속연수 감소와 잦은 이직 등으로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체계적 인적자원 관리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서울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6호)
-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제1항에서 3항)
- 시장이 시립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립병원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 시장은 시립병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 성장기여 및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제1항에서 제3항)
- 시장이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호,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업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인사 및 평가”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6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병원의 직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다.

③ 병원의 직원이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병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시장은 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병원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

② 제1항의 병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기관 및 혁신사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0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 2에 따른 의료인의 보호

7.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제23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u>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u></p> <p>7.、8. (생략)</p> <p>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보칙</u></p> <p><u><신설></u></p>	<p>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6.、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8. (현행 제9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인사 및 평가</u></p> <p>제20조(교육) ① <u>시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6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u></p> <p>② <u>병원의 직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다.</u></p> <p>③ <u>병원의 직원이 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병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이를 병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p> <p>1. 2. (생략)</p> <p>〈신설〉</p> <p>3. ~ 5.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1조(표창) 시장은 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병원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p> <p>② 제1항의 병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기관 및 혁신사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포상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5조의 2에 따른 의료인의 보호</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7.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p> <p>제6장 보칙</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생 략)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